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05/31 이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29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대책본부장”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구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구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서울특별시 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평가반의 반장(이하 "평가반장"이라 한다)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중 고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 및 등록취소 신청서와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⑦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등록 취소) 위험도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평가단원 본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 취소를 원할 경우

제7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지역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평가단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9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서울특별시 안전대책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및 인근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각종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등록취소[ ]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 속		직 위			
주 소	(우) -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

위 본인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 등록취소[ ]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10㎜×297㎜

〔별지 제1호서식〕

(뒷쪽)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 업무의 효율적 운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위험도 평가 관련 전문분야 자격사항

○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간

○ 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등록취소 신청서 상의 개인정보를 귀 본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10㎜×297㎜

〔별지 제2호 서식〕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소 속 :

주 소 :

사 진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90㎜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Tel : 02-xxxx-xx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90㎜

〔별지 제3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297㎜

〔별지 제4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시 동작구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297㎜

〔별지 제5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297㎜

〔별지 제6호 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29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 제정이유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제4조)

나.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제5조)

다.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제8조)

라.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제11조)